

01

공직후보자 검증보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1. 들어가며

선거 때 또는 내각이 새로 구성될 때마다 의례 겪게 되는 것이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다. 이러한 검증은 후보자들이 속해 있는 당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청와대 검증기구(舊 인사수석실 또는 민정수석실) 및 국회에서 이루어졌다. 주로 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지만 검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합의된 원칙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¹⁾ 그러다 보니 검증이 공직후보자의 자질이나 업무 수행 역량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로 과거 불법적, 비윤리적 사안에 얼마나 연루되어 있는가를 들춰내 이를 공직자로서의 적합성을 재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분위기가 강하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당연한 것이지만 문제는 논란이 되는 많은 부분이 공직후보자의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다.

물론 공적 업무를 수행해야 할 공직자 후보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잘못된 것으로 비춰지는 사안에 연루되어서는 안 되고 아무리 사적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후보 검증에 꼭 공개되어야 할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로 삼는 사안에 대한 맥락이나 배경에 대한 이해는 검증과정에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듯하다. 특히 검증은 선출직 공직후보자보다는 임명직 고위 공직후보자에 대해서 더욱 심하게 이루어진다. 여야가 공수가 바뀔 때마다 후보 검증에 다른 잣대를 혹독하게 들이대는 경향도 여전하다. 이러한 공직후보자 검증의 악순환은 검증의 주체가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겨오면서 더욱 굳어지는 듯하다.²⁾

지난 제20대 대선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청문회가 너무 과중하여 자진 사퇴하거나 중도 낙마하는 후보가 나타나고 후보 적정성에 대한 보고서 채택이 거부되기도 했다. 비록 적임자 선택을 위해 이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로 인하여 후보자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될 가능성과 적절한 시기에 적임자 선택에 실패함으로써 국정공백이 생기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지적도 있다.³⁾ 이러한 이유로 청와대나 국회의 검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청문

1)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 임명 배제 기준을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로 확대한다는 원칙을 발표했으나 이후에도 공위공직자들이 임명될 때마다 문제가 불거졌다.” 김고은 (2022. 3. 18). 언론의 공직자 검증 보도, 검증 필요하다. <기자협회보> URL: http://m.journalist.or.kr/m_article.html?no=51214

2) 홍성철 (2017).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사검증 보도의 문제점. <관훈저널>, 통권 144호, pp.82-88.

3) 그럼에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매우 엄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듯하다. 김성수 (2022. 4. 21). 낙마낙마, 또 낙마...청문회 벽에 좌절했던 초대 내각의 흑역사. <서울신문> URL: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21500113>

회가 진행될 때마다 나오고 있다. 개선안 중 하나가 공직후보자의 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검증은 미국처럼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것이다.⁴⁾ 사적이고 도덕적 영역이 검증과정에서 제한 없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는 공직후보자의 역량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단순히 '망신주기'나 '발목잡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적 영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된 기준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상황이 변할 때마다 검증 주체의 검증 방식과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는 이유이다.

더욱 큰 우려는 언론의 후보자 검증보도이다. 청와대나 정당 또는 국회의 검증과 함께 언론은 선거 때마다 검증보도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소위 레저시 미디어의 경우, 선거국면에서 자사에 차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약 3~4인의 '검증팀'을 꾸리고 검증보도를 준비한다.⁵⁾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언론에 보도되는 검증보도의 내용은 이미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논란의 내용을 방향이나 크기는 다르지만 받아쓰기하듯 그대로 기사화하여 보도하게 된다.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이나 색깔에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언론의 보도가 검증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짚어주고 검증과정을 검증하고자 하는 기사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단순히 논란을 릴레이하거나 사실 등을 통해 대통령의 고민스런 모습을 부각하고 언론사 나름대로 사퇴여부를 진단하기도 한다.⁶⁾

이러한 언론의 검증보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없는 것처럼 언론이 검증보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기사화하고 하지 않을 것인가, 사적인 영역에 대한 논란은 어느 정도 보도할 것인가에 대한 언론의 합의된 기준이나 원칙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내용까지도 보도하거나 오히려 이런 내용을 언론사의 입맛에 맞게 침소봉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면 언론보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이러한 이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언론의 검증보도상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공직후보자의 사적인 정보와 관련된 경우에는 검증보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검증보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상당 기간 계속되어 왔음에도 아직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지금의 보도행태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의 제시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있었다고 하더라도 언론사가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실천할 만큼 설득력이 크지 않았다고 사료된다. 아니면 아직도 많은 언론인들이 언론의 검증보도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바람직한 검증보도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적하는 것이어야 하고, 보도할 것과 보도하지 않을 것을 구분해서 하는 보도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I. 검증보도의 근거와 문제점

청문회를 통한 검증의 대상인 공직후보자는 2005년부터 장관직이 포함되면서 전체 약 66명이 되었다고 한다. 상당히 많은 수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통해서 실시하다보니, 갈수록 서로간에 양보나 타협 없이 일단 조사에서 나타난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검증도 100% 완벽할 수 없듯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검증에 임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를 검증 보도 차원에서 기사화한 언론은 정정보도 청구를 당하기도 한다. 언론은 그런 경우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검증 주체의 잘못이라는 태도를 보이거나 언론사 차원에서 검증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피치 못해 발생한 오보라고 피력하기도 한다.

이 지점에서 왜 언론의 검증보도가 필요하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된다. 언론의 검증보도는 당연시되는 상황이지만 왜 그리고 누가 검증보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법이나 윤리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공직자의 청렴성, 도덕성, 그리고 업무처리의 공정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차원에서 의혹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의무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검증보도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차원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원에 따르면 공직자는 국민의 감시하에 있어야 하는데 이를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주체는 언론이 된다. 따라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중의 정당

4) 김형규 (2020. 11. 16). "장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TF' 만든다. <경향신문>
URL: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011161238001#c2b>

5) 2022년 한국언론법학회 특별세미나 (2022. 3. 17). <공직후보자 검증보도의 쟁점과 나아갈 방향>

6) 안병규 (2013). 고위 공직자 후보 검증보도에 관한 뉴스 프레임 비교 분석.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제17권 제2호, pp.117-157.



한 공적 관심사에 대해 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 측면에서 실시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영역이라고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생활 영역에는 국민의 알권리 논리가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실제 알권리는 국가가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알권리의 범위는 국가에서 개인으로까지 확장하게 된다. 그래서 공직후보자 개인의 공적 활동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 검증보도는 결국 국가 운영 등 중대한 공적 결정을 책임지는 적절한 인물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⁷⁾

이처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검증보도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흔히들 언론의 공적 기능으로 알고 있는 파수견(watchdog)의 점검기능(checking value)과 일맥상통한다. 다시 말하자면 언론의 취재보도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 때문이라는 것이다. 권력은 견제자와 감시자가 없다면 남용되기 쉬우며 이러한 권력에 대한 유일한 감시비판 기능을 언론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컬럼비아대 헌법학자 빈센트 블라시(Blasi)는 언론을 '사적 영역에 속하는 유일한 공적 존재'라고 보면서 비록 언론의 상업주의적

7) 알권리의 범위가 개인에게까지 확대되었지만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보도 여부와 범위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박용상 (2013). <언론의 자유>. 서울: 박영사.

병폐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언론이야말로 광범위한 조사와 면밀한 보도로 공직자 비리를 감시할 수 있는 '공적 영역에 존재하는 유일한 사적 조직'이라고 주장했다.⁸⁾

이와 같은 이해에 근거한다면 언론의 공직후보자 검증보도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실시되는 파수견 기능의 일부라고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파수견 기능은 수정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에 의해 충실히 보장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 제21조상의 언론·출판의 자유 규정에서, 그리고 언론중재법상의 제3조 제3항 기자들의 접근권 조항과⁹⁾ 제4조 제3항 취재권을 인정하는 규정에서 언론의 파수견 기능을 보장한다.¹⁰⁾ 즉 권력의 남용을 점검(견제하고 비판)하는 공익적 역할을 하는 유일한 사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검증보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은 검증의 직접적인 주체는 아니다. 대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공직자로서의 자질, 도덕성, 청렴성, 정책적 능력, 업무처리의 공정성에 대해서 이루어지는데 언론의 검증보도도 이러한 검증 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논란이 되는 사생활 관련한 영역은 바로 도덕성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쟁점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도덕성 영역에서 탈세, 병역비리, 그리고 부동산 투기(불법매매)를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이는 같은 맥락에서 탈세나 병역 문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검증보도는 좀 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자녀 대학 특혜 입학 관련한 내용도 자주 기사화되고 있다.

만일 언론이 검증보도를 하면서 제대로 된 기준에 따라서 보도하지 못한다면 후보자에 대한 단순 흠집내기에 불과해 검증보도의 목적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가 된다. 다시 말하자면 제대로 된 검증에 있어 언론이 '파수견(watch dog)' 역할을 못하고 단순히 '공격견(attack dog)'이나 '사냥견(hunting dog)'의 역할을 하게 되면 검증보도가 근거 없는 물어뜯기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언론은 최대한 사실적 근거를 확인

8) Blasi, V. (1977). The checking value in First Amendment theory. Am. B. Found. Res. J. 1977, pp.521, 527-542.

9) 언론중재법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③ 언론은 정보원(情報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10) 언론중재법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③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11) 홍성철 (2017). 같은 글.



하여 제시해야 하고, 비판 당사자의 견해나 반론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해야 하며, 비판적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을 지양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이전 정권까지 해오던 청와대 인사검증을 폐지하고 고위 공직자 검증을 별도의 기관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5월 24일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단'을 신설하고 여기서 공직자와 공직후보자들의 인사검증을 전담하도록 했다. 인사검증단의 성격이나 구성 등에 대해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인사검증에 외적인 압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예견되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검증의 주체가 누구이든지 간에 사생활 관련 검증이 완벽하기는 힘들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시행한 공직후보자 검증에서 200여 개의 검토 리스트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사생활과 관련된 리스트에는 대개 공직후보자의 본가나 처가 중 사회적 논란이 되는 일에 종사한 경험 여부, 이혼 또는 재혼 여부, 질병 또는 정신과 진료 여부, 북한 방문 여부, 민사소송 연루 여부, 개인파산 전력 여부, 가정폭력 여부, 해외 유학중 자녀 여부, 관세법 위반 경험 여부(탈세), 성희롱 여부, 국내외 부동산 매입 여부(투기 여부) 등이 포함된다. 새로운 기관에서 사생활 관련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가 명확치 않은 만큼 어느 정도 검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런 만큼 언론의 보도도 신중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검증보도에서 사생활과 관련되어 논란이 된 사례, 즉 인격 영역에

대한 보도이면서도 '검증보도' 차원에서 당연히 보도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후보자들의 사퇴나 낙마로 이어졌던 사례들을 내용과 유형에 따라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군복무 의혹 등을 포함한 병역 비리 보도, 2) 가족의 사생활이나 사적 정보의 보도, 3) 후보자 본인의 불륜 사실 보도, 4) 몰래 녹음하거나 녹취한 내용 보도, 5) 아이의 출생 배경이나 숨겨진 자식 여부에 대한 보도, 6) 정치꾼이나 사기꾼들의 언론플레이에 놀아난 보도, 7) 탈세 관련 보도(액수에 상관없이 탈세범으로 개념화할 수 있음), 8) 부동산 투기(매매) 보도, 9) 과거 발언의 거짓말 논란 보도, 10) 본인은 감추고 싶은 장애, 질병, 성정체성 등에 대한 보도, 11) 진영 논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보도, 12) 검증 내용을 선정적으로 전달하려는 보도, 13) 내밀한 영역의 보도를 알권리의 대상화하는 보도 등으로 나타났다.¹²⁾

국회에서의 검증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이전보다 더욱 공세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검증보도는 국회에서 언론보도를 위하여 준비한 자료를 그대로 보도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자료를 맥락이나 기준 없이 그대로 기사화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아닌 윤리적인 문제의 경우에도 마치 불법에 연루된 것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인터넷과 SNS(특히 유튜브)에서 이미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사화하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¹³⁾ 이는 언론이 꼼꼼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타 언론사들의 보도 경향에 편승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언론의 더 세심한 사실 확인이 요구된다.

언론의 보도 방식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언론사에 따라서 검증보도의 횟수와 보도량이 다르게 나타났다. 검증보도의 대상이 되는 공직 후보자가 누구냐에 따라 언론사마다 검증보도 방식이 다른데 아예 검증보도를 내지 않는 언론사가 있는 반면, 수차례의 보도를 상당한 지면이나 시간을 할애해서 과도하게 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 또한 언론사들은 '논란'이라는 제목을 달고서 기사화하여 국민들이 검증 대상

12) 김성수 (2022. 4. 21). 같은 글.

13) 이재진 (2019. 2. 13). 언론의 소셜미디어 인용 어디까지 허용돼야? <미디어오늘> UR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no=146832>

14) 김성수 (2022. 4. 21). 아내도, 자식도 다 반대... '신상털기' 장으로 변질된 인사청문회. <서울신문> URL: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21500108>

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사실이나 전문가 칼럼 등을 통해서 자발적 사퇴나 낙마 또는 임명 강행을 종용하는 듯한 보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언론의 검증보도는 언론사들의 합의를 전제로 한 기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물론 정권이 바뀔 때 따라서 이전 정권 때 논란이 된 내용이 다시 불거지는 것을 비판하면서 무리한 검증 방식을 문제 삼는 보도도 있다. 그러나 많은 언론들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검증보도를 내는 경우가 아직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 공직 후보자 검증에 대한 법원과 언론의 인식

언론이 공직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판결은 없으나, 공직자의 경우 항상 국민들의 검증의 대상이 되며 언론이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2002년부터 나오기 시작하였다. 법원은 2002년 이전까지는 언론의 공익적 역할에 대해서 건전한 여론형성자로서의 역할에 한정하여 판결하였다. 그러나 2002년부터 법원은 언론의 사회감시비판자로서 역할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게 된다. 즉 언론은 여론의 형성자일 뿐만 아니라 권력의 남용과 사회적 부정부패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비판하는 기능도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22년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적,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경우와는 달리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¹⁵⁾ 다시 말하자면 언론의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더 나아가 2003년 판결에서는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15) 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다.¹⁶⁾ 언론의 파수견 기능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법원의 이해는 그 이후에도 계속된다.

2006년 대법원 판결에서 법원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인정하면서 이를 위한 보도에 있어 언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보도의 특성에 근거하여 언론보도의 내용이 비록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공직수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혹을 품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쉽게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는 언론자유的重要内容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다.¹⁷⁾

결국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자면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과 업무처리의 공정성 대한 의혹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검증보도 차원에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16) 대법원 2003.1.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등.

17) 대법원 2006.5.12.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보도에 있어 사생활에 관련된 사안 또는 사적인 영역에 대한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직 인물/공직 사안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공직 인물의 사적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3년에 와서 그 기준을 처음 제시하게 된다. 2013년 대법원은 공직자를 포함한 공직 인물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를 할 때 보도의 타당성을 3가지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보도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생활 관련 사안이 정당한 공적 관심사인가의 여부를 보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는 꼭 검증보도의 경우가 아닌 경우라도 유명연예인과 같은 공인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보도할 때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의 영역에 속해야 한다는 2007년 대법원이 제시한 원칙과 동일한 것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보도가 특정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보도는 정당한 취재보도 절차를 거친 정당한 방법으로 보도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공직자의 검증에 있어 사생활이 관련된다 하더라도 정당한 공적 관심사이며, 공익목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취재·보도되었다면 가능하다고 법원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떠한 사적 영역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속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독일 등에서 수용하고 있는 인격 영역(사생활 영역)에 대해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격영역론을 택하는 독일법은 사생활 영역을 공적 영역, 사회적 영역, 사사적 영역, 그리고 내밀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여기서 내밀한 영역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¹⁸⁾ 이와 같은 구분에 따르자면 공직자의 사생활 영역 중 공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은 최대한 보도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사사적 영역의 경우에는 적절한 비교형량을 통해서 보도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 다만, 내밀한 영역에 대해서는 보도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법원의 판결에는 사사적 영역과 내밀한 영역에 대한 구분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¹⁹⁾

〈표 1〉 인격(사생활) 영역

공적 영역	사사적 영역
공직 활동, 공직 관련 업무 처리, 공직 출마, 공직 회의, 선거, 투표, 기자회견 등	주거, 결혼, 이혼, 연애사, 여행, 취미생활, 가족 생활, 소비패턴, 요리 솜씨, 친족 및 가족간의 다툼, 몸무게, 신체 사이즈, 가발 착용 여부, 음치, 건강 정보, 나이, 친구관계, 개인 금융 정보, 종교, 출입국 기록 등
사회적 영역	내밀한 영역
회사, 직장, 학위, 공적 장소에서의 강연, 세미나, 토론 발표 등	개인의 성생활, 성적체성, 치명적인 질환, 일거리에 기록한 개인적인 생각

〈표 1〉에 따르면 공직후보자의 ‘공적 영역’은 당연히 보도의 대상이 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개가 권장된다. 공적 영역은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인간생활의 영역으로서 사회정치적 영역, 국가영역이 여기에 속한다. 사회적 영역의 경우에도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개인의 생활영역을 의미한다. 여기까지는 보도의 경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과 법원이 충돌하는 영역은 사사적 영역과 내밀한 영역 사이라고 할 수 있다. 사사적 영역의 경우 사적 영역과 비밀영역으로 구분하는데, 사적 영역은 가족, 가정, 친구, 친척과 같이 친밀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의 영역으로 사적인 대화의 경우에 일정한 보호를 받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보호를 받지는 못한다. 내밀한 영역은 자유의 최종적이고 불가침적인 영역을 포함하는 가장 좁은 인격 영역으로 최대한 보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사적 영역의 경우에 언론은 보도에서 이익형량을 통해서 보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이러한 영역론적 접근이 수용되기보다는 언론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모습을 보인다.²⁰⁾

우리나라 언론은 ‘보도의 대원칙’이 없이 상황적 판단과 다른 언론사들의 보도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향이 크다. 우리 법

18) 김재형 (2014). 공인보도와 인격권. 〈언론중재〉, 제134호(겨울호), pp.62-102, 97. 후브만(Humann)은 개인 영역, 사적 영역, 비밀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벤젤(Wenzel)은 내밀 영역, 비밀 영역, 사적 영역, 사회적 영역, 그리고 공적 영역으로 구분한다. 아래 〈표 1〉은 이러한 두 사람의 구분을 정리하여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19) 박용상 (2008). 〈명예훼손법〉. 서울: 박영사.

20) 이재진 (2022. 3. 17). 〈공직후보자 검증보도의 쟁점과 나아갈 방향〉. 2022 한국언론법학회 특별세미나.

원은 사생활 영역에 대한 검증보도를 허용하면서도 어떤 사안을 어느 정도로 허용하는가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직접적으로 보도를 하는 언론인의 경우 법원의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보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언론은 공직자를 포함한 공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일관된 판단의 기준(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언론의 인식과 판결에서 나타난 법원의 인식은 괴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엇보다 공인에 대해서 법원이 아직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음에도 언론은 공인의 존재를 좀 더 일관되고 명확한 존재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²¹⁾ 같은 맥락에서 공인에 대한 보도는 좀 더 자유롭고 비판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향도 나타난다.²²⁾ 이와 함께 언론은 공인에 대한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국민의 알권리 용어 남용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언론은 나름대로의 고정된 공인 기준을 가지고 기사화하려는 성향을 보이며 특히 공직자의 사생활 보호 정도는 일반인의 경우보다 크게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²³⁾

IV. 나가며

전술한 바와 같이 고위공직자의 검증보도, 특히 사생활 영역에 대해 어느정도 보도하는가에 대해서 한국 언론계에 ‘합의된’ 기준은 없다. 이 때문에 검증보도 방식은 언론사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 <한겨레>는 1월 17일 신문에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보도하며 “법원의 판단을 1차보도 기준으로 삼아 제한적으로 전하되 사적 대화 등도 배제하며 유권자의 알권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발언에 집중하고자 했다”는 알림을 내보냈다.²⁴⁾ 당시 MBC 등의 보도를 둘러싸고 보도를 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바, <한겨레>는 나름대로의 검증 기준을 세우고 여기에 맞는 보도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²⁵⁾

<한겨레>의 경우에서처럼 공직후보자 검증보도의 경우에는 무조건 피나

21) 이재진 (2018). <언론과 공인>. 한양대 출판부.

22) 심미선 (2020). 언론보도에서 알권리와 인격권 충돌에 관한 언론인 인식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6권 2호, pp.1-40.

23) 이재진 (2018). 같은 책.

24) 김영희 (2022. 3. 18). 한겨레. 내밀한 사생활 어디까지?... ‘고위공직자 검증, 언론사별 기준 공개해야’. <한겨레> URL: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035249.html>

25) 흥미롭게도 ‘7시간 통화 녹음의 경우, 법원마다 방송가능범위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도 했다.



르기식 보도나 아전인수격 해설보도를 지양하고 언론사마다 검증보도의 기준을 세우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검증팀을 구성하여 선거 보도에서 필요한 검증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필요가 있다. 언론사들은 자신들의 보도원칙이나 기준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언론사에 윤리강령이나 보도준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한 언론사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때문에 언론은 검증보도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사생활의 경우 보도할 영역과 보도하지 않을 영역을 잘 판단하는 것이 요구된다. 보도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사생활 여부가 보도를 꼭 해야만 하는 공적 중요성(public relevance)이 있는가를 엄밀히 따져서 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²⁶⁾ 공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언론사 차원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만일 보도하려고 하는 내용이 회사의 보도 기준에 일치하지 않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회사 차원에서 보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생활과 관련된 검증은 ‘속보 경쟁’의 대상이 아니다. 누가, 어떤 후보가,

26) 이준웅 (2014. 8. 19). <인사검증 보도의 현주소와 개선점>. 관훈클럽 세미나.



어떤 자리에 임명되었고, 그 인물이 어떤 사생활상의 문제가 있는가를 경쟁적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속보], [단독] 등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보도를 통해서 의혹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가 최대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토대로 해야 한다. 특히 사생활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비판적 보도의 경우에는 현저히 악의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한다.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쓰고 이를 어떠한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기사를 쓰지 않는다.

무엇보다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의 범주에서 보도하되 극히 내밀한 사적 영역에 관한 사항이나 일반에 노출해서는 안 될 개인적인 비밀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예단하는 것은 삼갈 필요가 있다. 공적 중요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적 근거에 기초해서 기사를 쓰지 않는다면 공직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성과 공익성이 면책사유가 되나 사생활 침해의 경우에는 진실이라도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최근 국회에서 검증이 더욱 심해지다보니 공직후보자들의 사생활 관련 정보도 과도하게 드러나게 되고 공직후보자들에게 부당하게 자료 요구를 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공인의 경우에도 내밀한 영역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므로 언론은 검증보도에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바꿔 말하자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라

고 하더라도 그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보도하는 경우에 별 근거 없이 이를 공적인 것인양 함부로 연결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방적인 의견을 담은 SNS상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인용하거나 이를 의혹 제기의 근거로 삼아 보도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이나 자료나 정보를 가져다 인용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이러한 방식으로밖에 보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하고 사실적 정보만을 취사선택하여 보도하며 동시에 당사자의 반론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최근 언론은 검증에 따르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국회 내의 검증과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향이 크다. 또 법원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도의 제한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언론사들은 보도 기준 마련에는 손 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신문윤리강령이나 실천요강 또는 각 언론사별 윤리강령 및 윤리규범에 고위공직자 검증보도 규정이나 사생활 보도와 관련된 구체적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언론은 법원에서 언론보도를 통한 여론을 판결에 반영해주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의 보도가 후보자의 검증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증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 선거 때는 좀 더 나은 검증보도를 기대한다. 🇵🇸